

주요경영사항 신고

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·공시합니다.

2008년 12월 22일

금융위원회(금융감독원) 귀중

회 사 명 : 아이에스동서주식회사
(영문명) I S DONGSEO CO., LTD.
(홈페이지) <http://www.isdongseo.co.kr>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-8번지
(전 화) 02-3218-6701

대 표 이 사 : 이 성 철

담 당 임 원 : (직 책) 상 무
(성 명) 양 수 창 (전 화) 02-3218-6701

작 성 자 : (직 책) 사 원
(성 명) 은 봉 오 (전 화) 02-3218-6701

제 출 이 유 :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6호에 의한
자기주식 처분 결정

※ 본 건 금융위원회(금융감독원)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,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,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,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자기주식 처분 결정

1. 처분예정주식 (주)		보통주	92,540		
		우선주	-		
2. 처분예정금액 (원)		보통주	744,021,600		
		우선주	-		
3. 처분기간		시작일	2008년 12월 23일		
		종료일	2008년 12월 31일		
4. 처분목적		직원 상여금 지급			
5. 위탁증권회사		-			
6. 처분전 자기주식 보유현황	직접소유주식 (주)	보통주	92,540	비율(%)	0.5
		우선주	-	비율(%)	-
	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 (주)	보통주	-	비율(%)	-
		우선주	-	비율(%)	-
7. 이사회결의일(결정일)		2008년 12월 22일			
- 사외이사 참석여부		참석(명)	-		
		불참(명)	2		
- 감사(감사위원) 참석여부		참석			

8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

가. 상기 2항 처분예정금액은 이사회결의일 증가로 산정.

나. 상기 5항 위탁증권회사는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장내매도가 아니므로 위탁증권 회사 및 1일 매도 주문수량 한도를 적용받지 않음.

- 처분방법은 장외매도임.

(아이에스동서(주) 주식계좌에서 해당 직원의 증권계좌로 대체)

다. 상기 6항의 처분전 자기주식 보유현황은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중 직원 상여로 처분하는 주식 92,540주임.